



우: 4827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54 상가동 9층

☎ (051)645-3113 FAX : 645-3110

문서번호 : 동원개발 제 24 -437호

시행일자 : 2024년 5월 25일

수 신 :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관리자

제 목 :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 이행 확인점검 실시 건.

1.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하며 현장소장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중처법 시행령 4조3호에 의거 안전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시공관리자 및 협력사 책임자의 확인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3. 따라서 각 현장에서는 다음의 내용과 같이 관리하시고 관련 과정은 문서화하여 기록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통 사용 현장은 현장통 이용, 미사용 현장은 별도(밴드, 카톡) 기록 유지.

----- 다 음 -----

1) 위험성 평가 이행내역 확인

- ▶ 당일 오전 10시 이전 현장 순회 점검, 이행확인 사진 등록
- ▶ 동원개발 시공관리자
 - 각 부서별 위험성평가 작업별 점검 후 1일 1회 이상 확인
- ▶ 협력사관리자
 - 현장소장+작업반장 1일 1회 이상 확인

2) 안전대책 미 이행 작업팀 작업중지 후 조치 완료 후 작업재개.

3) 점검확인 : 안전관리자(첨부 서식 활용) 주 1회 현장소장 보고.

4) 본사확인 : 주간보고 및 현장 점검시 확인 .

5) 점검실적 평가

- 현장소장 평가 10% 감점 반영,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무재해포상 제외.

첨 부 : 1.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 이행 확인점검 현황표 1부.

2. 확인점검 사례 1부.

동 원 본 부

직 인 생 략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 이행 확인점검 현황

업체명	부서	직위	성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동원개발	건축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전기									
	설비									
	토목									
협력업체	00개발	소장								
	00개발	반장								
	AA건설	소장								
	AA건설	반장								
▶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 대로 작업하는지 확인. 작업전 교육/작업지휘자/ 신호수/ 주변통제등 계획서를 준수하여 작업				결재	안전관리자	공사부장	현장소장			

확인 점검 사례

想哭的时候

卷之三十一

古漢集

현장통 화면

新羅王廟가 論衡考 (卷之四)

古文真義

The image consists of a 2x4 grid of photographs documenting industrial processes. The top row shows: 1) A worker welding a metal frame; 2) A large metal sheet being processed on a conveyor belt; 3) A worker operating a machine with blue protective panels; 4) A worker welding a metal structure. The bottom row shows: 5) A worker welding in a workshop; 6) A worker welding a metal frame; 7) A worker welding a metal structure; 8) A worker welding a metal structure.

卷之三

제작: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 대한민국 출판문화진흥원 | 제작: 대한민국 출판문화진흥원

四三

지체정지 현황	현장내 작업일정 현황	작업일정 후 미작업분 차재와 전 면적으로 인한 천도 물품 수령 및 청구	출하 물품	작업일정 후 미작업분 차재는 전부는 공탁회 로운 출하전드 천도 물품 수령에 관련	근로자 확인대상
조치일	조치처	점화처	조치책임자	조치일	무수속
2023-09-20	조치처	점화처	조치책임자	조치일	무수속

四

월터설비가 험악화(惡化)되는 원인

주가취재요한



在於此，我們可以說，這就是「中國文化」的「中國性」。

（一）新規登録（会員登録） / （二）会員登録（新規登録） / （三）会員登録（既存登録）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시행령 제4조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확인·개선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함
-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기업이 '스스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위험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발굴하고, 작업방식, 안전·보건 조치의 적용에 대해 감독을 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유해·위험물질을 대체하는 등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되, 제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하거나 개인에게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시 대책의 적절성, 개선 진행 상황 및 개선 완료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 위험요소의 제거·대체, 공학적·행정적 통제, 개인 보호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험성이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감소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 지난 2008년 2월 비준한 ILO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1981년)'에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위험이 없도록 보장)와 사업장 차원에서의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
- 다만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등을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대로 사업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관리도록 하려는 것임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마련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란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대책의 수립·이행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업무처리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함은 물론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정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또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①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②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보수 시 및 ③작업방법·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는

-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함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유해·위험 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소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및 유지보수 작업, 납품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첫째,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기계·기구·설비마다 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되,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기계·기구·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하되, 특히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파악한 화학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 1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야 함
- 셋째,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 유형과 연계하여 위험 장소와 위험작업을 파악하도록 하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는

- 첫째,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제거·대체·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둘째,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유형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위험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여부를 확인 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해·위험요인이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